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83
----------	------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의자 : 조인철 · 이건태 · 신장식
박수현 · 이개호 · 주철현
한정애 · 위성곤 · 고민정
문진석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 · 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현재, 농림어업인 대다수가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
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34년 1월 1일”을 “203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